

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20일
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

나. 제안이유

-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(90,750평)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설치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
- 이 때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(안 제4조 ~ 제5조)
-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(안 제6조)
- 전용금지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-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은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,

대규모 택지개발(30만제곱미터 이상)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시설부담금 관리운용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,

- 검토결과,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